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효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이효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
김용일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
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유정인,
윤종복, 이병운, 이봉준,
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
이종환, 임춘대, 전병주,
채수지, 최민규, 허 훈,
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콘서트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, 최적관람석의 설치 운영의 장소가 공연장 등만 포함하고 있어 시립체육시설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약자들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관리·운영하는 공연장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립체육시설에도 최적관람석 설치되도록 명시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할 ‘공연장’을 ‘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’로 확대함(안 제2조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공연장”을 “공연장,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공연장 등"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<u>공연장</u>, 집회장,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3.·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연장,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,</u> ----- 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